



제 432회 국회 (임시회)
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< 전담여행사 금지행위 규정 및 범정부 협력 근거 마련 >
■ 조계원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4986호)

2026. 2.

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김 용 규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전담여행사 금지행위 규정 및 범정부 협력 근거 마련	2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: 조계원의원 등 10인

나. 발 의 일: 2025. 12. 8.

다. 회 부 일: 2025. 12. 9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에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,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단체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저가여행,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.

이에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(안 제12조의3 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).

Ⅲ. 검토의견

1. 전담여행사 금지행위 규정 및 범정부 협력 근거 마련

가. 개정안 요지

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, 전담여행사 관리 또는 문제 상황 대응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3).

나.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의3(전담여행사 지정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2조의3(전담여행사 지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전담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1.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수수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의존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</u>

현행	개정안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<u>취소</u>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1·2. (생략) <u><신설></u> 3·4. (생략) <u><신설></u>	2.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3.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수수료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 ④ ----- ----- ----- -----<u>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</u>----- -. ----- -----. 1·2. (생략) 3. 제3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4·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.

현행	개정안
④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지정 · 갱신· <u>지정취소</u> 및 전담여행 사에 대한 관리·감독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.	⑥ ----- ----- <u>지정취소·업무정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다. 검토사항

현행법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관광 관련 양해각서·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에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, 현재 전국에 178개의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전담여행사가 운영되고 있음¹⁾.

「관광진흥법」

제12조의3(전담여행사 지정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·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(이하 "전담여행사"라 한다)로 지정·관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,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

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 2.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3.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
 4. 그 밖에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여행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④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지정·갱신·지정취소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·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

제21조의2(전담여행사 지정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행업자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(이하 "전담여행사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양해각서·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별로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.

1. 여행업자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
2.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갖춘 자일 것
3.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의 여행상품 기획·집행능력을 갖춘 자일 것
4.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것

② ~ ⑧ (생략)

이와 관련하여 전담여행사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,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고의·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,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중국인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쇼핑 강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²⁾, 여행상품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전담여행사에 대

1) 2026. 2. 4. 기준

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에 대하여 ①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, ②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한 쇼핑 강요 또는 모욕적인 언행, ③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수수료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할 시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, 전담여행사 지정 또는 관련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개정안을 통하여 여행업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, 공정한 질서 유지를 효과적으로 도모함으로써,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.

문 의 처
02)6788-5377

2) “외국인은 늘었는데, 아직도 ‘쇼핑 관광’?... 제주 단체여행의 민낯”, JIBS, 2025.10.8.,(<https://www.jibs.co.kr/news/articles/articlesDetail/52658?feed=na>)